● 이달의 칼럼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은 위헌적이고, 실무교육도 미흡해

박 선 영
· 국회의원(자유선진당)
·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헌법학 박사)

논란 속에 개원한 로스쿨의 첫 졸업생이 2년 후면 배출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었고, 일본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걱정은 '다양한 법조인 양성과 사법서비스 향상' 이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에 과연 부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곧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조직역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로스쿨법

로스쿨 제도는 처음 출발부터 문제 투성이였다. 지난 10여 년 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로스쿨제도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회기종료 2분을 남기고 단, 3분 만에 졸속으로 입법화되었다. 그야말로 불법적인 입법, 정당성이 결여된 입법이었다. 그로 인해 입법직후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 온 것은 어쩌면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로스쿨을 유치한 학교나 유치에 실패한 학교는 물론 학생들까지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다시 로스쿨과 직결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하다가 좌절되었다. 로스쿨 개원을 불과 3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그것도 한나라당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로스쿨도 마친 강용석 의원은 로스쿨 학비가 너무 비싸 법조직역이 세습화하고 부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토론을 했고, 그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가졌다. 그 후 본 의원

은 강용석 의원과 함께 변호사시험법안을 부결시키고 새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같은 내용의 법안이 두 달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학비도 결국은 입학정원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로스쿨법의 입학정원이 2천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로스쿨의 학비가 결코 싸질 수 없다. 입학정원 40명에 교수를 각 과목별로 다 갖추어 놓아야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학비를 더 내릴 수 있겠는가? 게다가 정부는 각 로스쿨에 장학금을 늘리라고 요구했지만, 등록금이 하한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액 장학금을 강요할 경우 로스쿨은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들이 대부분 처음 약속했던 전액 장학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일본은 아예 로스쿨에 대해 장학금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처음에 이 법에 반대했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고, 농어촌 학생들도 얼마든지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개별적으로 설득했다. 그러나 인가 당시에 전액장학금 약속을 50% 이상 지킨 학교는 강원대와 건국대뿐이다. 고려대와 동아대, 이화여자대, 아주대는 10% 미만의 전액 장학금 지급률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로스쿨 졸업까지 평균 1억 이상의 돈이 드는데, 어떻게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로스쿨의 정원이 지금처럼 2천 명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의 소지가 많다. 법사회학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4천명으로 늘어날 때까지는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 생각이다.

로스쿨 실무교육의 형식화와 로스쿨의 학원화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실무교육 강화였다.

책상과 칠판만 갖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졸업 후에 실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서 받아야 했던 20세기형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법문서작성론', '실무수습', '모의재판', '민사법 실무' 등 실무교육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문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들을 양성하려면 로스쿨을 해야 한다는 것이 로스쿨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분들의 초창기 명분이었다. 그러나 과연 로스쿨이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실무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답변은 매우 부정적이다.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매우 열악하고, 실무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초빙되었던 법조인 출신 교수들도 상당 수 로스쿨을 떠나고 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로스쿨 학생들의 수습 기간도 달랑 2주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실무 수습을 할 수 잇겠는가? 관련기관 순방을 통해 수박겉핥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

현재의 변호사시험법상 기본과목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로스쿨의 특성화도 잘 지켜질지, 그 또한 의문이다. 각 대학마다, 국제화, 금융화 등을 내세우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를 시도했고, 그로 인해 가산점도 받았지만, 시험과목에서 제외된 과목들을 과연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특성화는커녕 로스쿨이 '학원화'할 위험성도 계속 남아 있다.

이같은 현행 로스쿨제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스쿨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서 로스쿨도 경쟁을 통해 더 좋은 교수진과 학생을 유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동시에 로스쿨 졸업은 자격시험이므로 절대평가 등을 통해 법조 직역의 문턱도 낮춰줘야 하지만, 동시에 로스쿨 졸업자가 사회 곳곳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로스쿨 졸업자는 모두가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도식적이고도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 의원도 초기에 보좌관을 변호사로 고용했듯이, 로스쿨 출신자가 입법부나 행정부를 비롯해 각종 공직에 두루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하고, 사회 각계 각층에도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법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각종 정부입법들이 50%가 넘는 우리 현실에서 '법'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이 앉아서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로스쿨정원이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일반인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로스쿨이 실무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인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서야 되겠는가? 그야말로 위헌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로스쿨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실무교육이 문제다.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강화는 로스쿨의 존립근거이자 존재의 이유이다. 일본 로스쿨이 실력저하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로스쿨들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자각해야 한다. 교과과정 개혁과 실무수업 강화는 로스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개의 로스쿨만이 아니라, 변호사회와국회, 법원 그리고 법무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야 없지 않은가? 특히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은 현재 30명의 검사를 47개 로스쿨에 교수로 파견해 부족한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보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10명의 검사들이 전국 25개 로스쿨에 파견되어 강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법무부의 계획이 형식적이 아닌, 로스쿨 실무교육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